

청년社長 프로젝트 지원업체 모집 안내(6월)

청년 소상공인들의 지속가능한 사업 존속 및 성장을 통해 도내 소상공인의 구조적 내실화 및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『청년社長프로젝트 모집』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.

전라북도소상공인희망센터

2020년 5월 29일

1. 사업기간 : 2020. 2. ~ 11.

2. 지원대상 : 도내 사업영위 2년 이상 청년 소상공인(만 39세 이하)

3. 지원내용

- 홍보 지원 : 다채널 홍보로 업체 마케팅 효과 극대화
- 포장재 개발 : 지원업체에서 판매중인 포장재 개발 지원
- 판로 개척 : 박람회, 판촉행사 등 참가지원을 통한 판로개척
- 교육 참가 : 교육비 지원으로 대표자 역량 강화
- 시설 개보수 : 실내디자인, 노후시설 등 개보수 지원

4. 신청요건

○ 신청일 기준 만 39세 이하, 도내 사업영위 2년 이상인자

○ 신청제외 대상

-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으로 운영중인 자
-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및 신용회복중인 자
-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
-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
- 비영리 개인사업자 및 비영리 법인사업자
- 사업 영속성을 침해할 수 있는 귀책사유(군 입대, 유학, 이민 등)가 있는 경우
- 전라북도 청년사장프로젝트 지원사업 기선정업체
- 동 지원사업의 지원분야와 동일한 각 지자체, 공공기관 등의 경영 지원사업에 기선정되어 수행중인 자 또는 기업

5. 지원업체 선정개요

- 평가방법 :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한 지원사업 기술서 평가
 -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비대면 평가로 진행 (평가위원 요청 시 유선연결)
- 평가내용 : 지원사업 신청사유의 적정성, 사업추진계획의 타당성, 향후 계획의 실현가능성
- 평가일자 : 2020. 6. 22.(월)
- 평가결과 안내 : 평가 후 2 ~ 3일 이내
 - ※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, 전라북도소상공인희망센터 공지사항 참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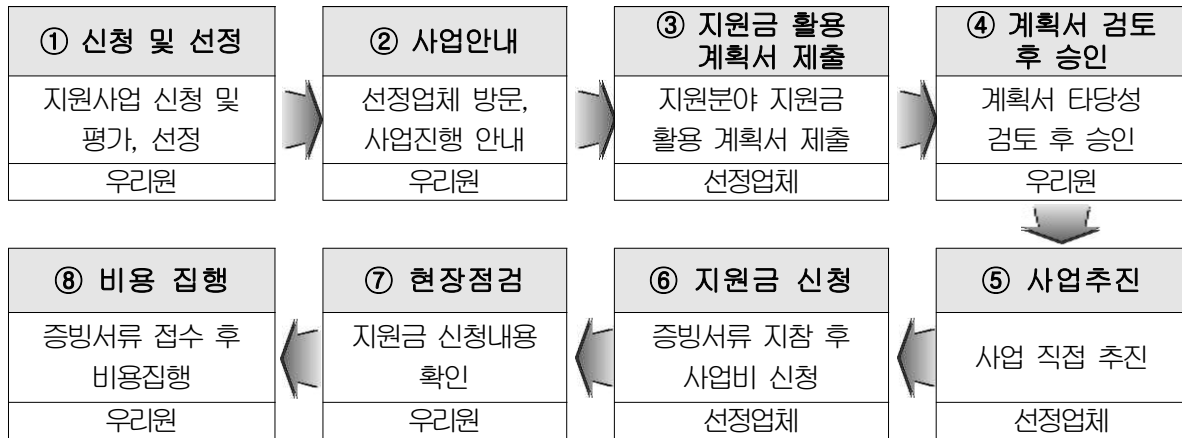
6. 세부지원내용

(단위 : 천원, 개)

구 분	내 용	지 원 금	업 체
홍 보	▶ 홍보물, 방송, 온라인 등 홍보 지원 - 제작비용만 지급 - 배포, 발송비용은 제한	업체당 3,000	2
포장재 개 발	▶ 판매중인 상품의 포장재 지원 - 일회용 포장재 제작은 제한	업체당 2,500	1
판로개척	▶ 박람회, 판촉행사 등 참가 지원 - 부스비, 참가비 등 실비 지원 - 여비 등은 지원 불가	업체당 2,500	1
교육참가	▶ 지원업체에서 참가하는 교육비 지원 - 운영 업종과 관련 없는 교육 불가	업체당 1,000	1
시 설 개 보수	▶ 실내디자인 변경, 매장 내 디스플레이, 노후시설 보수 등 리모델링 지원 - 전/후 차이가 있어야 함	업체당 3,000	2
기 타	▶ 지원업체에서 필요한 지원사업 - 심사위원 인정시만 가능	업체당 2,000	1

- 자부담 20% 이상(공급가 기준), 자부담금 납부 확인 후 지원금 지급
예시) 외주용역 시 계약금액 3,750,000원(공급가기준) ⇒ 지원금 3,000,000원(80%) 지급
계약금액의 20%인 750,000원 + 부가세 375,000원 = 총 1,125,000원 자부담
- 선정업체에 직접지급 불가, 용역수행 해당업체에 지급

7. 추진절차 ※ 추진절차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

8.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

- 신청방법 : 우편, E-mail 접수 (도장날인, 접수확인 必)
 - 주 소 : [54852]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945-6 전라북도소상공인희망센터 운영본부
 - E-mail : jks@jbba.kr
- 신청기간 : 2020. 5. 29.(금) ~ 6. 15.(월), 16:00
 - ※ 신청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, 우편신청 시 발송 2~3일 후 접수확인 必
- 신청서류
 - 【서식1】 청년사장 프로젝트 신청서 및 기술서 1부
 - ※ 기술서 분량은 3장 이내로 제한
 - 【서식2】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동의서 1부
 - 【서식3】 청년사장 프로젝트 참여 의무사항 및 이행 협약서 1부
- 첨부서류 ※ 공고일 기준, 최근 1개월 이내 발급서류만 인정
 - ① 사업자등록증 1부 (법인의 경우 대표자 신분증 사본 포함)
 - ② 국세, 지방세 납세증명서(국세-홈텍스, 지방세-정부24)
 - ③ 매출액 확인서류(2018 ~ 2019) / (택1)
 - ▶ 표준재무제표증명원(손익계산서 매출액 기준)
 - ※ 표준재무제표증명의 손익계산서 매출액 중 기타매출(국고보조금, 개발보조금 등)은 제외하고 산정
 - ▶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
 - ④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(2019 ~ 2020) / (택1)
 - ▶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: 보험자격득실확인서
 - ▶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
 - 국민연금보험료 결정내역서
 -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
 - 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
 - ⑤ 재창업자의 경우, 전 업종 폐업사실증명원(개업일, 폐업일 확인)

9. 기타사항

- 지원신청기업은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증빙서류를 자발적으로 제출하여야 함
- 인증 및 증빙자료는 공고일 기준으로 유효하여야 함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개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
- 평가에는 제출서류만 반영되며, 증빙자료가 없는 것은 반영되지 않음
- 지원신청서의 내용을 허위기재 또는 누락한 경우, 선정취소·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(선정 이후 기간 포함)
- 사업공고 및 안내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지원신청 업체에 귀속됨
-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,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은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, 보완서류 미제출 시 신청 포기로 간주함
- 사업비 신청 시 결과물에 대한 모든 증빙을 자발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진흥원 요청 시 적극적으로 임해야 함
- 선정 후 진흥원에서 요구하는 매출액 등의 증빙자료 제출에 성실히 임해야 함

10. 문의처

- 전라북도소상공인희망센터 운영본부 ☎ 063)717-1308

2020. 5. 29.

전라북도소상공인희망센터